

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53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5375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92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범석

변론 종결2021. 4. 16.

판결 선고2021. 6. 11.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929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 중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 2009. 8. 5. 접수 제8587호로 마친 각 가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별지 목록 순번 1, 2, 3, 6,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1522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3,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9. 8. 5.부터 매월 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1)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1522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위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 2009. 8. 5. 접수 제85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9. 8. 5.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위자료지급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카합1029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20. 4. 20. 이 사건 패소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4,378,360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1098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위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을 합하여 청구금액 4,893,838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한 점, 원고는 동해시 L 임야 6,298㎡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데, 피고들은 2020. 12. 3. 위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추심권자로서 4,893,838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현철

판사조장현

판사엄지아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취하하고, 무효확인 및 일부 금원지급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